(별지 제35호 서식)

(갑 지) (처리기간 : 10일)

즉시반출업체(물품) 지정 신청(결과통보)서

※ 문서번호 :

● 신 청 자

1. 상 호				2. 통관고유부호	
3. 주 소				4. 대 표 자 명	
5. 업 종		6. 업 태		7. 사업자등록번호	
8. 업체구분	□포괄담보업체 □개별담보업체 □신용담보업체 □정부기관등 □무담보기관				
9. 관할지세관					

● 즉시반출업체 지정요건

10. 포괄담보업체 및 개별담보업체 기재사항

① 제조업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가 ? □ 예 □ 아니오

포괄담보업체인 경우 신청세관에 포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가? □ 예 □ 아니오

② 최근 2년간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와 제192조의2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에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? □ 예 □ 아니오

③ 최근 2년내에 관세등 제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가? □ 예 □ 아니오

④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가? □ 예 □ 아니오

년 도	수 출		수 입	
	건 수	금 액(천$)	건 수	금 액(천$)

11. 신용담보업체 기재사항

① 신청세관에서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인가? □ 예 □ 아니오

12. 정부기관등 및 무담보기관 기재사항

② 관세법시행령 제125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인가? □ 예 □ 아니오

※ 즉시반출업체 지정여부(세관기재 사항)

□ 지 정 (지 정 기 간 : 년 월 일 ~ 년 월 일)

□ 비지정 (비지정 사유 :)

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제2-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반출업체(물품) 지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상 호 : ○○○○○○ 대표자 : ㊞ ○○○ 세관장 귀하	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운영에관한지침제2-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반출업체(물품) 지정(비지정) 결과를 통보합니다. 년 월 일 ○○○세관장 담당자 : ㊞

"※" 표시가 있는 항목은 기재생략(세관 기재사항임)

(을 지)

● 대 상 물 품

HS번호(10단위)	지정구분	품명·규격	※ 즉시반출물품 지정여부	
			지 정	비지정